

「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제도」

자주 묻는 질문(FAQ)



목 차



1. 재질·구조 평가 대상 여부	1
2.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	8
3. 재질·구조 평가 신청	10
4. 재질·구조 평가결과 표시	14
5. 포장재 재질·구조 개선 및 중단명령	16

① 종이박스 등 EPR 비대상 포장재도 재질·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?

-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조·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재가 재질·구조 평가대상임
- 따라서, 종이박스 등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EPR 비대상 포장재는 동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
 - 다만, 몸체가 종이 재질인 포장재의 일부분에 합성수지 재질(뚜껑 등)이 사용된 경우, 합성수지 재질은 평가 대상임

② 합성수지재질의 세탁비닐 및 1회용 비닐장갑 등도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은?

-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2에 해당되는 필름류는 포장재가 아닌 제품에 해당함
-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조·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재가 재질·구조 평가대상임
- 따라서, 합성수지재질의 세탁비닐 및 1회용 비닐장갑 등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2에 해당하는 필름류 제품은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

③ '19.12.25일 이전 제조한 제품에 대해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여부는?

- 자원재활용법 부칙 제2조(재질·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·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미적용
- 참고로, 법 시행일 이후 출시되는 기존제품*은 계도기간내 (~'20.9.24)에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며, 그렇지 못한 제품의 포장재를 '20.9.24일 이후 사용하는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1항제2호의2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됨
- 기존제품에 대한 평가 결과 표시는 '20.9.24부터 표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'21.3.24(연장신청 시 '21.12.24)까지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며, '21.3.25 이후 제조한 제품에 등급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1항제2호의3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됨

* 기존제품: '19.12.25 이전부터 제조·수입되고 있던 제품으로 법 시행 이후 계속 출시되는 제품(제조일자가 '19.12.24까지인 제품은 적용 비대상)

④ 포장재의 재질·구조 평가 신청시 동일한 재질·구조인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?

-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환경부 예규)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·구조별로 자체평가한 후 환경공단에 평가 신청

⑤ 의무생산자의 상표가 부착된 판촉용 제품(OEM 제품) 포장재의 경우, 재질·구조 평가 대상인지 여부?

-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포장재의 경우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대상임

⑥ 국내제조업체인 A사에서 생산한 제품(OEM에 해당되지 않음)을 의무생산자인 B가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코자 구입한 경우, 평가대상 주체?

-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포장재로서
 - 사은품 제조업체인 A사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 제품·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A사가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를 받아야 함
 - 사은품 제조업체인 A사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 제품·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비대상임
- 아울러, A사로부터 구입한 사은품을 B사가 재포장(2차 포장)한 경우에는 2차 포장재에 대해 B사가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를 받아야 함

⑦ EPR 비대상인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블리스터 포장재(다중포장재)의 자체평가 방법은?

-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조·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재가 재질·구조 평가대상임
 - 따라서, 종이재질 포장재는 EPR 비대상 포장재로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
 - 다만, 합성수지 재질 블리스터 포장재는 트레이*로 분류하여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
- * 종이, 펄프, 플라스틱, 알루미늄 등 비교적 강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진 뚜껑 없는 접시형 용기

⑧ 「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」 제2조에 따른 다중포장재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?

-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 각각 평가하여야 하며,
- 뚜껑과 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 몸체의 재질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

⑨ 포장재 재질·구조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입증서류 보존기간은?

- 의무생산자가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·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
- 또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관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동조제2항에 따라 마지막 기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
- 따라서,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·구조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입증서류를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관리대장의 마지막 기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환경공단의 조사·확인 시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함

⑩ EPR 신고대상과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대상이 동일한지?

-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출고·수입실적서 제출 대상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업종별 매출·수입액 기준 및 포장재의 출고·수입량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임
-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대상은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임
- 따라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·재활용하여야 하는 포장재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대상은 동일함

⑪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해에 제조·수입·판매하는 제품·포장재의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대상인지 여부?

-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매출·수입액 등 규모 기준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
-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제조·수입하는 제품·포장재는 재질·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비대상임

- 다만, 평가 대상이 되는 해에 환경공단으로부터 재질·구조 평가를 받은 제품·포장재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의무생산자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평가등급을 포장재 겉면에 표시할 수 있음

⑫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재질·구조 평가 방법은?

-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16호*에 해당하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
 - * "생분해성수지제품"이란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(環境標識)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.
- 다만, 생분해성수지와 합성수지를 첩합하거나, 병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합재질 합성수지에 해당되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의무생산자가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동조제2항에 따라 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
⑬ 종이와 종이팩 구분 및 페트병과 페트용기류 구분 기준?

- 일반종이, 단면코팅, 양면코팅, 단면 부착된 종이의 경우 "종이"로 분류하여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비대상임
 - ※ 합성수지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종이재질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의 경우 합성수지 복합재질에 해당함
- 종이팩은 우유팩, 주스팩과 같이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 등을 부착하여 액체 등을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이므로 일반 종이와는 구별됨
- 또한, PET용기 중 "목과 마개가 있는 용기"는 PET병으로 분류하고, 목과 마개가 없는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 단일·복합재질 용기류로 분류

⑭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,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신청서 제출시기는?

- 전년도 출고·수입량에 따라 당해연도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확인되는 시점*(7.31)으로부터 30일 이내 당해연도 제조·수입한 제품·포장재에 대해 평가 신청(1회에 한하여 30일 추가 연장)

*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출고·수입량이 확정되는 시기

⑮ 포장재 제조업체와 사용업체 중 평가 신청 주체는?

-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신청을 해야 함
 -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·수입·판매업자 또는 포장재의 제조·수입업자가 평가신청 주체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,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

⑯ 수입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공급받는 자 중 평가 신청 주체는?

-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는 관세 납세의무자가 평가신청 주체에 해당

⑰ 소비자(불특정 다수)에게 판매되지 않는 제품의 포장재도 평가 대상인지?

-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·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평가 대상임
- ※ 원료용 B2B 제품, 원재료 수입 포장재를 사용 후 자체 폐기하는 경우 및 자체 소비하는 제품의 포장재 등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EPR 대상 포장재는 모두 평가 대상임

⑱ 무상으로 제공하는 샘플 제품의 포장재는 평가 대상인지?

- 유상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·수입하는 제품의 포장재는 평가 대상임

⑲ 평가결과 표시면제 대상 포장재가 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?

- 평가결과 표시 면제 대상 포장재도 평가 대상에 해당

① 재활용 용이성 등급의 종류는?

- 포장재별 재질·구조 세부기준에 따라 “재활용 최우수, 우수, 보통, 어려움” 등 4개 등급으로 구분
 - “재활용 최우수” 등급은 PSP, 페트병에 한정되며, 이 경우 우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최우수 등급의 조건까지 충족할 경우에 해당
 - “재활용 우수” 등급은 포장재별 재질·구조 세부기준에서 “재활용이 용이한 재질·구조”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, “재활용이 어려운 재질·구조”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
 - “재활용 어려움” 등급은 포장재별 재질·구조 세부기준에서 “재활용이 어려운 재질·구조”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
 - “재활용 보통” 등급은 포장재별 재질·구조 세부기준에서 “재활용이 용이한 재질·구조” 또는 “재활용이 어려운 재질·구조”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

② 관련법령에 의한 필수 표기사항을 스티커 라벨 등에 표시하여 부착하는 경우, 동 라벨이 평가 대상인지?

-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이후 관련법령, 규정(해외 법령, 규정 포함)에 따라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 또는 검사필증 등은 등급평가 시 해당 라벨 또는 검사필증을 부착하기 전 포장재 재질·구조를 기준으로 등급평가
- ※ 수입제품의 한글표시 라벨, 「인삼산업법」 제17조에 의한 검사필증, 꿀 등급제 표시필증, 위생용품의 표시기준,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

③ 케이블타이, 철 클립, 유리병의 리드, 손장비 등은 포장재 구성 항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?

○ 잡자재에 해당하며, 해당 포장재 몸체의 재질·구조 기준에 따라 평가

※ 잡자재는 포장재 몸체에 편리성 부여 및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포장재의 구성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, 병의 손잡이, 캐릭터 마개, 빨대, 제품의 개봉 방지·유통이력 관리 등을 위한 스티커 등이 해당

④ 합성수지병류의 경우, 포장재 종류는 어떻게 분류하는지?

○ 합성수지 종류에 따라, 페트병, 단일재질 용기, 복합재질 용기로 구분됨

⑤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, 트레이류의 경우, 색상에 대한 등급 기준은?

○ PET재질은 무색이 재활용 우수이고, 유색이거나 PET-G재질이 혼합된 경우에는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

○ PET 이외의 단일재질은 색상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음

① 평가 신청서 작성 기준은?

- 포장재의 몸체, 라벨, 마개 및 잡자재 등 구성항목을 평가하여 「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(환경부예규)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·구조 단위로 평가 신청

②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?

-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를 받은 기존 제품의 포장재와 동일한 재질·구조를 사용한 경우 신청 비대상
 - 이 경우 별도 평가 신청 없이 '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관리대장'에 기입 후 출시 가능
- 새로운 재질·구조의 포장재를 사용한 경우, 별도 평가 신청 필요

③ 평가신청서에 대한 보완 요구 횟수 및 기간은?

- 의무생산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포장재의 재질·구조 평가가 어려울 경우, 환경공단에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 보완 요구 또는 현장방문 등을 실시
 - 아울러, 평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기간 연장 가능

④ 평가신청서 제출서류 중 “포장재의 재질·구조 자체평가 결과”의 작성 방법은?

- 포장재 재질·구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,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성적서 등) 등을 토대로 포장재 재질·구조 정보를 파악한 후 「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(환경부예규)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

⑤ 포장재의 평가등급(재질·구조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?

-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·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제조 판매 품목허가증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·허가 서류, 포장재 제조 업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관계 업체 직인이 찍힌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등 기타 재질·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
⑥ 육안판정의 증빙서류는?

- 「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」(환경부고시) 별표 2에서 정한 육안판정 가능 항목은 사진, 동영상, 실물 제출 등을 통해 판정결과 입증 가능

⑦ 평가신청서 제출 시 포장재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지?

- 포장재의 라벨, 잡자재 유무 등의 구조 파악을 위해 포장재 사진 제출 필요
 - 리드 등 잡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마개를 개봉한 상태의 사진 추가 제출

⑧ 포장재 재질·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분석 기관은?

- 「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」(환경부 고시)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기기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이 가능한 국내외 시험분석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모두 인정

⑨ 포장재 재질·구조 등급 평가 신청서 수수료는?

- 신청 수수료 없음

⑩ 재활용 어려움 등급인 경우,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결과서가 '21.3.24자로 일괄 발급 되는지?

-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는 평가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평가 결과서 번호가 부여되고 출력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하여 운영중
- ※ 다만, 계도기간 내 평가 결과서를 받은 경우,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과 관계 없이 계도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(~'20.3.24) 표시 가능
- 참고로,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제외한 다른 등급의 포장재는 평가 결과서를 '21.3.24까지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
- 계도기간 내에 해당 포장재 재질·구조에 대한 평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, 계도기간 내에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

⑪ 사용금지 대상인 PVC재질 포장재에 대해 평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?

- PVC재질 포장재 등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의 경우에도 제도 시행일 ('19.12.25) 이후 해당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출시할 경우 계도기간 내 자체평가 후 평가신청서를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

⑫ 다중 포장의 경우, 각각 평가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?

- 내포장, 외포장 등 분리되는 포장재별로 평가 신청

⑬ 제조원·수입국이 다양한 수입제품의 경우 평가 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지?

- 제조원·수입국에 관계없이 포장재 재질·구조별로 평가 신청

⑭ 복합재질 합성수지의 경우, 사용된 재질이 매우 다양함, 사용된 재질에 따라 각각 평가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?

- 포장재 몸체 기준으로 재활용 어려움 구조는 2종으로 분류, 그 외 등급은 5종으로 분류
 -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①합성수지 이외 재질 병합사용(알루미늄 두께 20 μ m 초과 포함), ②PVC 계열 재질 사용 등 2종
 - 그 외 등급은 ① 복합재질 용기·트레이류, ② 단일재질 필름·시트류, ③ 복합재질 필름·시트류(알루미늄 미포함), ④ 복합재질 필름·시트류(알루미늄 두께 20 μ m 이하) 등으로 구분

⑮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·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기?

- 자원재활용법 제3조의3제6항에 따라 평가받은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·구조 정보는 제품의 제조·수입·판매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
 - 최초 제출 기한은 '21.4.15일임

⑯ 시스템 입력 이외에 오프라인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?

- 평가 대상자가 공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 신청 및 제품 목록 제출 등 법정민원을 제출하는 경우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으로 장부(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)의 기록 및 보존을 같음

① 포장재의 재질·구조 평가결과 표시 시기는 ?

-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표시를 완료하여야 함 (제조공정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6개월 내 표시가 어려울 경우 추가 9개월 표시기한 연기 신청 가능)
- 다만, 계도기간 내 평가 결과서를 받은 경우,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과 관계없이 계도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(~'20.3.24) 표시 가능

② 수입제품의 경우,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결과 표시 대상 제품에 대한 기준일은?

- 포장재 재질·구조 등급 표시기준(환경부고시)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여야 함

③ 포장재의 재질·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, 벌칙은 ?

-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

④ 「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」 제2조에 따른 다중포장재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 평가결과 표시 방법은?

- 「포장재 재질·구조 등급표시 기준」 제4조제4호 따라 분리배출표시 상단 또는 하단에 평가결과 일괄표시 가능
- 다만, 평가대상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(겉포장)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음

⑤ 내용물이 30ml(또는 30g) 이하인 제품을 다중포장한 경우, 내용물 포장재(1차 포장재)와 외부 포장재(2차 포장재)에 모두 재질·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?

- 「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」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재는 표시를 생략하고 2차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가능

⑥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, 우수, 보통 등급은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?

- “재활용 보통” 등급 이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선택사항으로 표시 의무는 없으나, “재활용 어려움” 등급은 평가결과 의무 표시 대상임

⑦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포장재에도 평가결과를 표시해야 하는지?

- 폴리염화비닐(폴리염화비닐리덴 포함)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을 제외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제1호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대상의 경우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

⑧ 등급표시 연기신청 시기?

- 표시 기한인 6개월이 도래하기 10일 전까지(공휴일 제외) “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”에 연기신청 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공단에 신청

①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2 및 제9조의4에 따른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의 재질·구조는?

-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한 모든 PVC·PVDC 재질의 포장재와 먹는 샘물 및 음료류의 유색 페트병 및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점(점)착제임

② 법 시행 전 PVC 재질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조·수입된 제품이 법 시행일('19.12.25) 이후 유통·판매가 금지되는지 여부?

-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·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음

③ 법 시행 전 다량의 PVC 재질 포장재를 구매하여 법 시행일('19.12.25) 이후 재고가 많이 있는 경우, 사용 가능 여부?

-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포장재 재질 · 구조 개선명령서상의 개선명령 이행기간*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

* 1년 이내 부여, 의무생산자의 신청에 따라 2년의 범위내 추가 부여 가능

④ 개선 대상 음료류의 구체적인 범위는?

-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제5.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제9호 음료류에 해당되는 제품임

※ 다류, 커피, 과일·채소류음료, 탄산음료류, 두유류, 발효음료류, 인삼·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

⑤ 개선대상 포장제도 재질·구조 평가 신청 및 평가결과를 표시해야 하는지?

- 개선대상 포장제도 평가 신청 및 평가결과 표시 대상임

⑥ 개선대상 예외에 해당하는 햄류 등에 대해 별도의 예외 신청을 해야 하는지?

- 포장재의 재질·구조 기준(환경부고시)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은 별도의 예외 신청 불필요

⑦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은?

-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4에 따라 제조·수입·판매 중단명령 처분 대상임
- 제조·수입·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 5에 따라 중단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

⑧ 중단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은?

- 자원재활용법 제39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부과됨